[서식]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식[선불카드]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(선불카드)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	
	주소			□ 6.18.이후 이사	전자우편	

대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신청인과의 관계	휴대전화 (유선)	
	주소					전자우편	

지급방법	유형	선불카드	
		[○]	
	수령처	읍면동 행정복지센터	방문지급(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)
		[ ]	[ ]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(필수사항)	확 인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 □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·군·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**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**합니다. □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**주민등록전산정보,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, 외국인 정보, 국민건강보험**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**관련 정보통신망**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**을 통해 조회**합니다. □ 개인정보 보유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**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**(보조금의 중복·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**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**합니다.	[ ]
□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·군·구청장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 **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를 활용**할 수 있습니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**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**(보조금의 중복·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할 수 있습니다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**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**합니다.	[ ]
2.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□ **위탁받는 자**: 농협, 전북은행 □ **위탁 목적**: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정산 □ **위탁할 개인정보 범위**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주소, 연락처 □ **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**: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.	[ ]

유 의 사 항 (필수사항)	확 인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쿠폰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소비쿠폰을 받게 한 경우,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(재판매, 현금화 등)에 사용한 경우,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비쿠폰을 받은 자 또는 소비쿠폰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[ ]
2.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
3.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,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소멸됩니다.	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합니다.

2025 년 월 일

ㅁ**신청인**(대리신청인) **성명 :** (서명 또는 인)

군산시장 귀하

구 비 서 류	1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[서식] 위임장

위 임 장

위임하는 사람	이름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위임받는 사람	이름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	전화번호
	주소	

민원내용	선불카드 수령 [ ]	이의신청 [ ]

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하는 사람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2. **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・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**